

건설폐기물 배출자 전자인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2020. 9.23. Allbaro운영부>

안녕하십니까? 올바로시스템입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면서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시간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처리자에게 인수된 후에 작성된 배출자의 사후인계서*가 다수 조사되었습니다.

* 사후인계서: 배출내역 입력시점이 처리자 인수시점 보다 늦게 입력된 인계서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간 인계서가 없이 폐기물이 이동하여 폐기물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주목하여 자체적으로 유선·메일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안내하여 왔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사후인계서 작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자체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10월 이후 작성된 사후인계서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법(붙임 참조)에 따라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하여 주시고, 운반·처리자들은 배출자의 인계번호를 지참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인계·운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반자는 운반차량의 정확한 배차정보를 배출자에게 전달하여 배출자가 배출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7.> (생 략)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제10조제2항 관련)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 상기 별표2의2 내용에 따라 처리자는 폐기물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전송·입력되면서 처리자 폐기물 인수시점(시간포함) 확인이 가능

⇒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 후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했는지를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배출자는 반드시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배출자 전자인계서를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을 하여야 함

배출자가 사후 작성한 인계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할 예정임